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정년연장조항 삭제
-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
-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
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(법률 제5568호, '98. 9. 19)
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서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였고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하던 것을 도복무조례의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였으며
-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고 또한 휴직기간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은 새로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-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